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지속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 3 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 소개서
 2.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 5 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6월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접촉, 방북활동 등 포함)이 없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 7 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3.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6.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7. 기타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 8 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② 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제 9 조(지원자금의 용도) ① 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 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가 기금지원사업의 내용중 주요사항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사업의 내용변경, 시기조정, 추가조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등) ①통일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등) ①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인 법인과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조작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